

## 영화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
상호(법인명)

영업소 소재지

전화번호

영화업의 종류
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 서류	없음	수수료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조례가 정한 금액 ( )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신고	→	접수	→	확인	→	결재	→	신고증 발급
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---

신고인

처리기관 : (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담당 부서)